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93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최혁진 · 정혜경 · 김우영
김동아 · 윤준병 · 조계원
이주희 · 박민규 · 박용갑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인구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의3, 제26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6조의3 신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
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하여 접근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콘텐츠 다양성 증진 지원) 정부는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본계획) ①·② (생략)</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의2. (생략)</p> <p><u><신 설></u></p> <p>7. ~ 11. (생략)</p> <p>④ (생략)</p> <p>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조(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6의2. (현행과 같음)</p> <p><u>6의3.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u>에 관한 사항</p> <p>7. ~ 11.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하여 접근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신 설>

제26조의3(콘텐츠 다양성 증진 지원) 정부는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